

FBMF Standard

미래방송미디어포럼표준(국문표준)

FBMF-STD-013

제정일: 2018년 12월 14일

지상파 UHD 모바일방송 재난경보  
서비스 요구사항

(Requirements for Emergency Alert Service  
of Terrestrial UHD Mobile Broadcasting)



표준초안 검토 위원회	디지털라디오분과위원회				
표준안 심의 위원회	운영위원회				
	성명	소속	직위	위원회 및 직위	표준번호
표준(과제) 제안	이상운	남서울대	교수	위원장	
표준 초안 작성자	이봉호	ETRI	책임연구원	-	
	양규태	ETRI	책임연구원	-	
사무국 담당				-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에 있으며,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과 사전 협의 없이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상업적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본 표준 발간 이전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약삭서 정보는 본 표준의 '부록(지식재산권 약삭서 정보)'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후 접수된 지식재산권 약삭서는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표준과 관련하여 접수된 약삭서 외의 지식재산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의장

발행처 :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신관 1108호

Tel : 02-568-3556, Fax : 02-568-3557

발행일 : 2018.12

# 서 문

## 1 표준의 목적

이 표준의 목적은 지상파 모바일 UHD 방송을 이용한 긴급 재난경보 서비스 송수신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주요 내용 요약

이 표준의 주요 내용은 지상파 모바일 UHD 방송을 이용한 긴급 재난경보 서비스 송수신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정의한다.

## 3 인용 표준과의 비교

### 3.1 인용 표준과의 관련성

해당사항 없음

### 3.2 인용 표준과 본 표준의 비교표

해당사항 없음

## Preface

###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andard is to define requirements for the transmission and reception of emergency alert services using terrestrial UHD mobile broadcasting.

### 2 Summary

The main contents of this standard defines the requirements for transmission and reception of emergency alert service using terrestrial mobile UHD broadcasting, and describes the items to be considered such as the type of disaster to be alerted, the target terminal, and so on.

### 3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Not applicable.

## 목 차

1 적용 범위	1
2 인용 표준	1
3 용어 정의	1
4 약어	1
5 본 문서의 목적	2
6 지상파 UHD 모바일방송 재난경보 서비스 요구사항	2
부록 I-1 지식재산권 협약서 정보	3
I-2 시험인증 관련 사항	4
I-3 본 표준의 연계(family) 표준	5
I-4 참고 문헌	6
I-5 영문표준 해설서	7
I-6 표준의 이력	8

# 지상파 UHD 모바일방송 재난경보 서비스 요구사항

## (Requirements for Emergency Alert Service of Terrestrial UHD Mobile Broadcasting)

###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국내 지상파 모바일 UHD 방송망을 통한 재난경보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을 적용범위로 한다.

### 2 인용 표준

#### 2.1 국제표준

없음

#### 2.2 국내표준

[1] TTAR-07.0025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수신 단말기 재난문자 표출 가이드라인 2018-11-01.

### 3 용어 정의

#### 3.1 웨이크업(wake-up) 기능

지상파 UHD 모바일방송 수신기의 전원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원을 차단하거나 극소화된 상태에서 재난경보 메시지를 수신하는 즉시 자동으로 전원 인가 상태로 전환하여 해당 메시지를 표출하는 기능

### 4 약어

UHD Ultra High Definition

## 5 본 문서의 목적

지상파 UHD 모바일방송망을 이용하여 차량용, 휴대용 등 지상파 UHD 모바일방송 수신 기능이 있는 수신기들을 대상으로 지진, 쓰나미, 태풍, 홍수, 폭염, 한파, 호우 및 전쟁 등 긴급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 발생이 예고될 때 이에 대한 경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재난경보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 6 지상파 UHD 모바일방송 재난경보 서비스 요구사항

- 6.1 재난경보 내용은 제공 대상 재난의 종류, 등급, 영향 범위, 지속 시간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6.2 긴급 재난경보 발령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6.3 일정 기준 이상의 높은 등급의 재난경보 발령 시 웨이크업(wake-up) 기능이 지원되어야 한다.
- 6.4 재난경보의 표출을 위해 소리, 진동, 문자, 그래픽, 애니메이션, 섬광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6.5 재난경보의 표출을 위해 차량용, 휴대용 등 디바이스의 종류별 특징을 고려한 정보 표출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 6.6 재난경보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를 기본으로 하되, 기타 언어 지원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 6.7 기상청, 재난안전청 등 주관기관들의 경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발령이 가능해야 한다. (예: 지진 자동경보 발령 시스템)
- 6.8 지상파 방송 매체의 모든 재난권역 지정에는 통일된 재난 권역코드가 필요하므로 DMB 재난 권역코드를 준용하되 추후 이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 부 록 1-1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 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

본 표준의 ‘지적 재산권 확약서’ 제출 현황은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상기 기재된 지식재산권 확약서 이외에도 본 표준이 발간된 후 접수된 확약서가 있을 수 있으니,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 록 1-2

### 시험인증 관련 사항

#### 1-2.1 시험인증 대상 여부

해당사항 없음

#### 1-2.2 시험표준 제정 현황

해당사항 없음

## 부 록 1-3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 본 표준의 연계(family) 표준

해당사항 없음

## 부 록 1-4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 참고 문헌

해당사항 없음

## 부 록 1-5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 영문표준 해설서

해당 사항 없음

## 부 록 1-6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 표준의 이력

판수	채택일	표준번호	내용	담당 위원회
제1판	2018.12.14	제정 FBMF-STD-013	-	디지털라디오분과위원회